

제23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
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(2018. 10. 16.)

2017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승인안
검 토 보 고 서



산업건설위원회
(전문위원 신능호)

목 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검토경과 | 1 |
| II. 제출근거 | 1 |
| III. 세입·세출예산 결산 총괄 | 1 |
| 1. 결산총괄 | 1 |
| 2. 세입결산 | 2 |
| 3. 세출결산 | 2 |
| 4. 세입·세출 처리상황 | 2 |
| 5. 일반회계 결산 | 3 |
| 6. 특별회계 결산 | 4 |
| 7. 예산의 이용·전용·이체현황 | 5 |
| 8. 계속비 결산 | 7 |
| 9. 예비비 지출 | 8 |
| 10. 다음연도 이월사업 | 9 |
| IV. 기금결산 | 10 |
| V. 채권액결산 | 11 |
| VI. 채무액결산 | 12 |
| VII. 보조금결산 | 12 |
| VIII. 기타 검토의견 | 13 |

2017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승인안 검 토 보 고 서

I 검토경과

- 제출일자/제출자: 2018. 9. 21./거창군수
- 회부일자: 2018. 9. 21.
- 상정일자: 2018. 10. 16.(제2차 산업건설위원회)
- 의안번호: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(제2018~59호)
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(제2018~60호)

II 제출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34조
-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
- 거창군재무회계규칙 제30조
-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

III 세입·세출예산 결산 총괄

1. 결산총괄(결산서 p21)

(단위: 백만원)

| 회계별 | 예산현액 | 세입결산 | 세출결산 | 차인잔액 (이월액)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
| 합 계 | 647,714 | 683,952 | 431,919 | 252,033 |
| 일반회계 | 576,360 | 610,801 | 398,099 | 212,702 |
| 특별회계 | 71,354 | 73,151 | 33,820 | 39,331 |

2. 세입결산(결산서 p31)

(단위: 백만원)

| 구 분 | 예산현액 (A) | 징수결정액 (B) | 수납액 (C) | 미수납액 (B-C) | 미수납액 처리 | | 비율(%) | |
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
| | | | | | 결손처분 | 이월 | C/A | C/B |
| 계 | 647,714 | 686,999 | 683,952 | 3,047 | 689 | 2,358 | 105.6 | 99.6 |
| 일반회계 | 576,360 | 613,215 | 610,801 | 2,414 | 646 | 1,768 | 106.0 | 99.6 |
| 특별회계 | 71,354 | 73,784 | 73,151 | 633 | 43 | 590 | 102.5 | 99.1 |

3. 세출결산(결산서 p33)

(단위: 백만원)

| 구 분 | 예산액 (A) | 예산성립 후증감액 (B) | 예산현액 (C)=A+B | 지출원인액 지출위 액(D) | 지출액 (E) | 다음연도 이월액 (F) | 집행잔액 G=C-E-F | 불용비율 G/C (%)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계 | 570,863 | 76,851 | 647,714 | 485,513 | 431,920 | 83,472 | 132,322 | 20.4 |
| 일반회계 | 505,735 | 70,625 | 576,360 | 446,443 | 398,099 | 75,085 | 103,176 | 17.9 |
| 특별회계 | 65,128 | 6,226 | 71,354 | 39,070 | 33,821 | 8,387 | 29,146 | 40.8 |

※ 다음연도 이월액에 자금 없는 이월액 200백만원 포함

4. 세입·세출 처리상황(결산서 p35)

(단위: 백만원)

| 구 분 | 세입 결산액 (A) | 세출 결산액 (B) | 차인잔액 (A-B) | 다음연도 이월액 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| | | | 명시 이월 | 사고 이월 | 계속비 이월 | 보조금 사용잔액 | 순세계 잉여금 |
| 계 | 683,952 | 431,919 | 252,033 | 44,176 | 28,910 | 10,186 | 3,919 | 164,842 |
| 일반회계 | 610,801 | 398,099 | 212,702 | 38,945 | 25,954 | 10,186 | 3,847 | 133,770 |
| 특별회계 | 73,151 | 33,820 | 39,331 | 5,231 | 2,956 | | 72 | 31,072 |

5. 일반회계 결산

○ 세 입(결산서 p40)

(단위: 백만원)

| 과 목 | 구 분 | 징수결정액 (A) | 수 납 액 (B) | 미수납액 (C) | 미수납액처리 | | 비율 B/A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-|
| | | | | | 결손처분 | 익년도이월 | |
| 계 | | 613,215 | 610,801 | 2,414 | 646 | 1,768 | 99.6 |
| 지방세 | | 27,927 | 26,748 | 1,179 | 113 | 1,066 | 95.8 |
| 세외수입 | | 20,319 | 19,083 | 1,236 | 533 | 702 | 93.9 |
| | 경세외수입 | 7,644 | 7,614 | 30 | 0 | 30 | 99.6 |
| | 임세외수입 | 12,675 | 11,469 | 1,206 | 533 | 673 | 90.5 |
| 지방교부세 | | 234,611 | 234,611 | | | | 100.0 |
|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| | 27,124 | 27,124 | | | | 100.0 |
| 보조금 | | 146,707 | 146,707 | | | | 100.0 |
| 보전수입등 | | 156,527 | 156,527 | | | | 100.0 |

○ 세 출(결산서 p65)

(단위: 백만원)

| 구 분 | 예산현액(A) | 지출원인 행위액 | 지출액(B) | 이월액(C) | 불용액 (D=A-B-C)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계 | 576,360 | 446,443 | 398,099 | 75,085 | 103,176 |
| 의회운영위원회 | 883 | 813 | 813 | | 70 |
| 총무위원회 | 288,957 | 198,715 | 195,334 | 7,286 | 86,337 |
| 산업건설위원회 | 286,520 | 246,774 | 201,952 | 67,799 | 16,769 |

○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- 부서별 내역

(단위: 백만원)

| 구 분 | 예산현액 | 지출원인 행 위 액 | 지출액 | 이월액 | 불용액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소 계 | 286,520 | 246,774 | 201,952 | 67,799 | 16,769 |
| 안 전 총 괄 과 | 7,816 | 6,980 | 6,317 | 1,063 | 436 |
| 경 제 교 통 과 | 17,223 | 12,661 | 12,260 | 3,347 | 1,616 |
| 산 립 과 | 24,237 | 20,664 | 17,469 | 5,423 | 1,345 |
| 환 경 과 | 20,143 | 19,029 | 16,409 | 3,155 | 579 |
| 건 설 과 | 66,467 | 55,071 | 43,221 | 20,735 | 2,511 |
| 도 시 건 축 과 | 46,379 | 43,675 | 26,655 | 16,944 | 2,780 |
| 농 업 기 술 센 터 | 78,127 | 62,874 | 53,888 | 17,045 | 7,194 |
| 수 도 사 업 소 | 25,278 | 24,990 | 24,903 | 87 | 288 |
| 거 창 사 건 관 리 사 업 소 | 850 | 830 | 830 | 0 | 20 |

6. 특별회계 결산

○ 세 입(결산서 p405, 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)

(단위: 백만원)

| 과 목 \ 구 분 | 징수 결정액 (A) | 수납액 (B) | 미수납액 (C) | 미수납액처리 | | 비율 B/A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-|
| | | | | 결손처분 | 익년도이월 | |
| 계 | 73,784 | 73,151 | 633 | 43 | 590 | 99.1 |
| 공 기 업 | 40,686 | 40,604 | 82 | 18 | 64 | 99.8 |
| 의 료 보 호 기 금 | 835 | 835 | 0 | 0 | 0 | 100.0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| 405 | 405 | 0 | 0 | 0 | 100.0 |
| 주 차 장 관 리 | 1,136 | 585 | 551 | 25 | 526 | 51.4 |
| 산업단지조성사업 | 6,067 | 6,067 | 0 | 0 | 0 | 100.0 |
| 수 질 개 선 | 5,516 | 5,516 | 0 | 0 | 0 | 100.0 |
| 댐주변지역지원사업 | 693 | 693 | 0 | 0 | 0 | 100.0 |
| 농 업 발 전 기 금 | 18,446 | 18,446 | 0 | 0 | 0 | 100.0 |

○ 세 출(결산서 p405,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)

(단위: 백만원)

| 구 분 | 예산현액 (A) | 지출원인 행 위 액 | 지출액(B) | 이월액(C) | 불용액 (D=A-B-C)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계 | 71,354 | 39,070 | 33,821 | 8,387 | 29,146 |
| 공 기 업 | 39,840 | 27,124 | 22,016 | 7,479 | 10,345 |
| 의 료 보 호 기 금 | 835 | 751 | 751 | 0 | 84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| 393 | 393 | 393 | 0 | 0 |
| 주 차 장 관 리 | 594 | 134 | 134 | 0 | 460 |
| 산 업 단 지 조 성 사 업 | 5,295 | 1,822 | 1,791 | 452 | 3,052 |
| 수 질 개 선 | 5,539 | 5,092 | 5,063 | 378 | 98 |
| 댐주변지역지원사업 | 689 | 689 | 610 | 78 | 1 |
| 농 업 발 전 | 18,169 | 3,065 | 3,063 | 0 | 15,106 |

7. 예산의 이용·전용·이체사용 현황(결산서 p393)

이 용(일반회계) : 해당사항 없음(결산서 p396)

전 용(일반회계) (결산서 p397)

(단위: 천원)

| 구 분 | 예산액 | 전 용 금 액 | | 비 고 |
|-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|
| | | 감 액 | 증 액 | |
| 21건 | 22,143,036 | 539,441 | 539,441 | |

※ 세부내역 : 결산서(p397)

검 토 의 견

- 예산 집행은 당초 예산 편성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적법하지만 여건 변화, 사업의 일부변경 등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경우

- 지방재정법 제49조(예산의 전용)에 근거하여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,
-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(예산의 전용)에 인건비, 시설비 및 부대비, 상환금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 산불진화차량 구입, 직불사업 대상 확대 등에 전용한 것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전용한 것으로 검토되었음.

□ 이 체(일반회계)(결산서 p399)

- 내역 : 8건 66,627천원
- 사유 :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물관리 이관에 따른 예산 이체
※ 세부내역 : 결산서(p399)

검 토 의 견

-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구·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「거창군의 세부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정」이 일부 개정되어 (2017.7.3. 훈령 제409호) 업무가 산림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이체 승인한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.

8. 계속비 결산(결산서 부속서류 p501)

(단위: 천원)

| 세부사업명 | 총 투자액 | | | 당 해 연 도 집 행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| 예산액 | 지출액 | 집행잔액 | 예산현액 | 지출액 | 다음연도 이월액 | 집행 잔액 |
| 합 계 | 96,318,346 | 81,019,264 | 588,492 | 29,186,322 | 16,574,228 | 21,072,397 | 585,643 |
|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| 5,200,000 | 4,611,508 | 588,492 | 1,758,322 | 1,172,679 | 0 | 585,643 |
| 스피드익스트림타운 조성 | 2,998,830 | 1,120,206 | 0 | 1,878,924 | 682,242 | 1,196,6830 | 0 |
| 거창 치유의 숲 조성사업 | 3,100,000 | 2,449,529 | 0 | 1,834,121 | 1,370,035 | 464,086 | 0 |
| 덧시골 폭포 등산로 연결사업 | 200,000 | 70,882 | 0 | 200,000 | 70,882 | 129,118 | 0 |
| 거창 향노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| 300,000 | 254,159 | 0 | 73,110 | 27,269 | 45,841 | 0 |
| 농촌테마공원 조성 | 11,787,159 | 9,952,157 | 0 | 3,252,814 | 3,032,384 | 198,478 | 0 |
| 기초생활인프라 (소규모 용수개발) | 14,978,440 | 13,818,475 | 0 | 3,423,827 | 3,050,134 | 373,693 | 0 |
| 농촌중심지활성화(일반지구) | 31,289,091 | 26,287,357 | 0 | 8,331,516 | 2,678,475 | 4,875,577 | 0 |
| 권역단위종합개발 | 24,805,826 | 22,082,780 | 0 | 6,774,688 | 4,117,917 | 1,731,985 | 0 |
| 마을단위경제(체험소득) | 100,000 | 33,455 | 0 | 100,000 | 33,455 | 66,545 | 0 |
| 마을단위환경(경관생태) | 200,000 | 78,113 | 0 | 200,000 | 78,113 | 121,887 | 0 |
|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 | 439,000 | 260,643 | 0 | 439,000 | 260,643 | 178,357 | 0 |
| 시군창의 | 677,000 | 0 | 0 | 677,000 | 0 | 677,000 | 0 |
| 취약지구 개조(궁항지구) | 243,000 | 0 | 0 | 243,000 | 0 | 243,000 | 0 |

검 토 의 견

- 지방재정법 제42조(계속비 등)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관리하며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- 또한,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며,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 총 14건의 계속비 이월 내역은 타당하게 검토되었음.

9. 예비비 지출(결산서 p401)

(단위: 천원)

| 과 목 | | | 지출 결정액 | 지출원인 행위액 | 지출액 | 이월액 | 집행잔액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|---------|
| 조 직 | 부 문 | 세부사업 | | | | | |
| 합 계 | | | 1,340,377 | 1,041,512 | 1,041,512 | 0 | 298,864 |
| 건 설 과 | 농업·농촌 | 한발대비 용수개발 | 60,000 | 44,914 | 44,914 | 0 | 15,086 |
| | 농업·농촌 | 한발대비 용수개발 | 60,000 | 0 | 0 | 0 | 60,000 |
| | 농업·농촌 | 한발대비 용수개발 | 475,000 | 405,946 | 405,946 | 0 | 69,054 |
| | 농업·농촌 | 한발대비 용수개발 | 525,000 | 376,506 | 376,506 | 0 | 148,494 |
| 농업기술 센 터 | 농업·농촌 | 가축방역지원 | 4,410 | 4,410 | 4,410 | 0 | 0 |
| | 농업·농촌 | 가축방역지원 | 7,500 | 5,595 | 5,595 | 0 | 1,905 |
| | 농업·농촌 | 가축방역지원 | 10,000 | 9,579 | 9,579 | 0 | 420 |
| | 농업·농촌 | 벼 병해충 방제 | 186,267 | 182,362 | 182,362 | 0 | 3,905 |
| | 농업·농촌 | 벼 병해충 방제 | 12,200 | 12,200 | 12,200 | 0 | 0 |

검 토 의 견

-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(예비비)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불구하고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.
- 건설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극심한 가뭄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이고, 농업기술센터 가축방역지원은 경북 김천시 AI발생에 따른 방역초소 운영이며, 벼 병해충 방제는 멸강나방 긴급 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예비비 집행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.

10. 다음연도 이월사업(결산서 부속서류 p525)

(단위: 백만원)

| 구 분 | 건 수 | 예산현액 | 이월액 | 비 고 |
|--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|
| 명 시 이 월 | 105 | 87,196 | 38,945 | |
| 사 고 이 월 | 162 | 120,037 | 25,954 | |
| 계 속 비 이 월 | 26 | 20,625 | 10,186 | |

검 토 의 견

-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,
- 보상협의 지연, 사업계획 미확정, 사업시기 미도래, 사업계획 변경, 준공시기 미도래, 공기부족, 사업대상지 미선정, 동절기 공사중지,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나,
- 매년 반복적 사유로 되풀이 되고 있어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집행을 위한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.

IV 기금결산(결산서 p489)

(단위: 천원)

| 구 분 기 금 명 | 전년도말 조성액 ㉑ | 당 해 연 도 증 감 액 | | | 당해연도말 조성액 (㉒)=㉑+㉓)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계(㉒)=㉑-㉔ | 조 성 액(㉑) | 사 용 액(㉔) | |
| 계(7종) | 13,385,704 | 149,977 | 763,931 | 584,462 | 13,565,174 |
| 사 회 복 지 기 금 | 4,026,403 | 36,575 | 106,516 | 69,941 | 4,062,978 |
| 식 품 진 흥 기 금 | 65,561 | 945 | 5,945 | 5,000 | 66,506 |
| 재 난 관 리 기 금 | 884,139 | 142,711 | 487,790 | 345,079 | 1,026,850 |
| 중소기업육성기금 | 6,584,745 | △24,519 | 111,573 | 136,092 | 6,560,226 |
| 아림예술제진흥기금 | 500,318 | 128 | 7,628 | 7,500 | 500,446 |
| 옥외광고정비기금 | 235,219 | 25,059 | 25,909 | 850 | 260,279 |
| 체 육 진 흥 기 금 | 1,089,319 | △1,429 | 18,570 | 20,000 | 1,087,889 |

검 토 의 견

- 2017년 말 현재 기금은 7종으로서 조성액은 13,385,704천원이며, 당해연도 조성액은 763,931천원이고, 사용액은 584,462천원으로 149,977천원이 증가되었음.
- 기금은 조성보다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사회복지기금, 중소기업육성기금, 체육진흥기금 등은 기금조성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집행 검토가 필요함.

V 채권액 결산(결산서 P657)

○ 회계별 총괄

(단위: 천원)

| 구 분 | | 전년도말 현재액 | 당 해 연 도 발 생 액 | 당 해 연 도 소 멸 액 | 당해연도말 잔 액 |
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합 계 | | 4,883,973 | 220,151 | 213,945 | 4,890,179 |
| 일반 회계 | 소 계 | 4,488,826 | - | - | 4,488,826 |
| | 전화선예치금 | 12,474 | - | - | 12,474 |
| | 학자대여금 | 4,343,352 | - | - | 4,343,352 |
| | 회 원 권 | 133,000 | - | - | 133,000 |
| 특별 회계 | 농업발전기금 | 5,250 | - | - | 5,250 |
| 기금 | 사회복지기금 | 389,897 | 220,151 | 213,945 | 396,103 |

※ 채권액은 원금 + 이자 기준임.

검 토 의 견

- 전년도 말 잔액은 4,883,973천원으로 당해 연도에 220,151천원이 발생하고, 213,945천원이 소멸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4,890,179천원임.
- 채권 종류별 현황을 보면 보증금채권이 145,474천원, 융자금 채권 4,744,705천원이며, 융자사업은 상환 기일 내에 회수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.

VI 채무액 결산(결산서 p665)

- 거창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14년도부터 채무 제로화를 달성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0원임.

VII 보조금 결산(본예산)(결산서 부속서류 p249)

(단위: 천원)

| 구분 | 예산액 | 수령액 | 집행액 | 이월액 | 집행잔액 (반납액)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합계 | 194,939,848 (70,472,158) | 195,404,238 (71,700,306) | 158,581,400 (50,659,783) | 29,426,224 (16,729,688) | 7,396,614 (4,310,835) | |
| 일반회계 | 188,293,884 (69,595,894) | 188,758,274 (70,824,042) | 152,626,189 (50,024,660) | 28,808,466 (16,489,909) | 7,323,619 (4,309,473) | |
| 특별회계 | 발전소 주변지역 | 30,000 | 30,000 | 29,928 | 0 | 72 |
| | 의료보호 기금 | 250,985 | 250,985 | 183,298 | 0 | 67,687 |
| | 산업단지 조성사업 | 930,000 (870,000) | 930,000 (870,000) | 689,793 (629,793) | 239,779 (239,779) | 428 (428) |
| | 수질개선 | 5,434,979 (6,264) | 5,434,979 (6,264) | 5,052,192 (5,330) | 377,979 (0) | 4,808 (934) |

※ 군비부담액은 71,700,306천원으로 총 보조사업비(수령액)에 대하여 36.7%에 해당함

※ ()내서는 군비 부담액임.

검 토 의 견

- 2017년도 보조금 수령액은 195,404,238천원으로 예산액 194,939,848천원 대비 100.2%이고, 집행액은 158,581,400천원으로 예산액의 81.3%이며, 29,426,224천원이 이월되고 7,396,614천원을 반납하였음.
- 보조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집행잔액 및 반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.

VIII

기타 검토의견

-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,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이며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할 것임.
- 따라서 결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결산에 대한 승인을 해주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, 다만 결산승인 과정에서 공급횡령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은 가능함.
- 또한 결산심사는 합목적성, 합리성, 합법성을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연도의 예산집행 및 편성을 위한 지도, 감독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.
- 거창군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용과 경제활력 회복, 지역특색에 맞는 투자전략으로 계속 사업은 완공위주로 신규사업은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하고, 양질의 일자리 창출,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발전 전략과 지역 간 합리적 재원배분, 각계각층의 의견수렴, 재정 운용 투명성과 재정관리의 실효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으나,
- 예산현액이 647,714백만원이고 이월사업비가 83,472백만원, 순세계잉여금 164,842백만원으로 38.3%가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것은 재정 계획과 재원 배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 하다고 할 것임.

-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이 610,80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7,115백만원 (16.6%)이 증가하였으며,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234,611백만원(38.4%)이고, 보조금 146,707백만원 (24.0%), 조정교부금 27,124백만원(4.4%), 지방세는 26,748백만원 (4.3%), 세외수입은 19,083백원(3.1%)으로 우리군 재정은 자체 재원보다는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비율이 높은 편임.
- 일반회계 세출은 398,09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8,755백만원 (7.8%)이 증가하였으며, 기능별로는 사회복지(22.8%), 농림해양 수산(18.9%), 국토 및 지역개발(11.7%), 환경보호(10.4%)등의 순 으로 많았음.
- 그리고 집행률은 산업·중소기업이 47.9%, 수송 및 교통이 59.3%로 저조한 실정이로, 이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이 보조금 교부 지연 등에 따른 요인과 만남의 광장 조성 등 보상지연과 사업위치 미확정 등 의 사유로, 이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세밀하게 검토하고 행정 절차 이행을 완벽하게 추진하지 않은데서 기인한 것으로 사 업추진 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임.
-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그 목적에 맞게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집행잔액 발생 및 반납하는 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이 필요함.
- 총 세입 683,952백만원중 잉여금이 252,033백만원으로서 36.8%가 집행되지 않고 이월 또는 불용된 것은 여러사유가 있겠지만 사업추진시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됨.